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12. 22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11. 21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4. 11. 24

다. 상 정 일 자 : 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4. 12. 2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주 강 우)

가. 제안이유

○내무부의 '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제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

○불용물품 감정액 상향조정(안 제17조 제4항)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함.

○제24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함.

○물품의 분류기준 개정(안 별표1)

비품 : 내용년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 5만원 이상"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제8조 단서의 관서당 경비로서 물품을 구매, 수리, 제조할 시에도 물품 출납 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토록 한 것은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한 것이고

제17조의 불용물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액을 상향조정한 것 등은 감정비용을 절감하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